

2020년 제3차 경찰공무원(순경)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- 해 경 학 과 -

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순경)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10일

해양경찰청장

1. 관련근거

- 가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및 제8조(신규채용)
나.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5조(시험의 방법) 및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등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해 경 학 과 (순경)
계명	7
남	4
여	3

3. 자격요건

가. 응시자격 및 연령

분 야	자 격 요 건	응시 연령
해경학과 (순경)	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(재학하였던) 사람으로서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	20세이상 40세이하 ('79.1.1 ~ '01.12.31)

※ 응시 상한연령 연장 :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

나. 해양경찰학과 분야 응시자 중 재학생(과목별 평점이 C학점 이상이며,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)은 성적증명서 및 해양경찰학 전공이수 확인증(학과 발급)을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(졸업생은 필기시험 합격 후 학위 증명서만 제출)

다.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하며,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현역일 경우는 교육원 입교 예정일('21.4.17.)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.

라. 최종시험예정일('21.3.17.) 기준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,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마. 경력계산,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('21.3.17.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바. 신체 조건표

구 분	내용 및 기준
체 격	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
시 력	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한다.
색 신 (色 神)	정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 다만, 항공·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. *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청 력	청력이 정상[좌우 각각 40데시벨(dB)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이어야 한다.
혈 압	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. (확장기 90 ~ 60mmHg, 수축기 145 ~ 90mmHg)
문 신	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,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*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(부정행위로 처리,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)

4.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

가. 시험공고 : 2020. 11. 10.(화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

나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
1) 접수기간 : 2020. 11. 10.(화) 18:00 ~ 11. 23.(월) 18:00 [14일간]

※ 응시표는 11. 25.(수) 10:00 이후부터 출력가능

2) 접수방법 : <http://gosi.kcg.go.kr>에 접속, 안내에 따라 접수

※ 응시수수료 5,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.

3) 접수취소 : 2020. 11. 24.(화) 18:00까지 가능하며,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
4) 응시원서 사진 :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(3cmX4cm) 업로드

※ 배경 있는 사진,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

5)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.

5. 시험일정 및 장소

구 분	시험일정	장 소	합격발표
필기시험	12.19.(토)	부산 지역 (세부장소 별도공지)	12.24.(목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
종합적성검사	'21.2.20.(토)~2.26.(금) (세부일정 별도공지)		-
신체·체력검사			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
서류전형	'21.3.4.(목)~3.5.(금)	해양경찰청	불합격자만 개별통지
면접시험	'21.3.17.(수)~3.19.(금)	추후공지	-
최종합격자발표	'21.3.31.(수)	해양경찰청 홈페이지	

※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적성·체력검사,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공지 예정입니다.

6.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

가. 필기시험 (객관식, 4지선다형)

1) 시험과목(5과목, 100분)

분 야	구 분	과 목(과목별 20문항, 4지 선다형)
해경학과	필수(4)	◦ 해양경찰학개론, 해사영어, 형법, 형사소송법
	선택(1)	◦ 항해분야(항해술), 기관분야(기관술) 중 택 1

※ 가답안은 12.19.(토) 원서접수사이트 채용자료실(문제 및 정답공개)에 공지 예정

2) 합격자 결정 : 매과목 40%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(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) 선발

나. 종합적성검사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.

※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.

다. 신체·체력검사

1) 신체검사

-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’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‘신체 조건표(별첨)’와 ‘신체검사 세부기준(별첨)’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※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다음 페이지 계속 ↓

2) 체력검사

- 종목 :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
- 매 종목 실격 없이 **총점(30점)의 40% 이상(12점) 득점자**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①~③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④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(남자 130초, 여자 150초 이내)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기타 평가기준은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별표5(별첨)에 따릅니다.

※ 도핑테스트 실시 : 응시생의 7%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(별첨)

라. **서류전형** :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마. **면접시험**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가능성,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성적검사(10점), 면접평가(10점), 가산점(5점)을 합산하여 **총점(25점)의 40% (10점)이상 득점자**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※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

7. 시험 가산점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※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2)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나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- 1)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별표4(별첨)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,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- 3) 어학능력 자격증은 **최종시험예정일(21.3.17.)을 기준으로 2년 이내** 것만 인정됩니다.
- 4)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

※ **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.**

8. **최종합격자 결정** : 필기시험(50%), 체력검사(25%), 면접시험(25%)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* 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제3항1호

9. 교육 및 임용

가. 교 육 : 2021년 4월 17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(예정)

※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※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,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(관련근거 :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9조(채용 후보자의 자격상실))

나. 임 용 :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입교육과정 평가 성적 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

10. 제출서류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 (보완)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**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**

11. 유의사항

가.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**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**

※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참조

라.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**와 **신분증 원본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**소지**하여야 하며 **응시표,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 아울러,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**학생증, 자격수첩**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마.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게재 예정이며,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**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바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.

사. 색약(약도)자의 경우 경찰병원,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**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**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자.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*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]에 따른 「채용후보자 등록원서」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제2항에 따라 **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**합니다.

차. **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·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,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카.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**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**

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팀(☎032-835-2736) 또는 지원하신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